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유소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석유제품의 종류 및 공급단가) 이 계약에 따라 공사가 사업자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단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다른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종 류	단 가	비 고
휘 발 유 경 유 등 유	공사가 정하는 주유소 공급가격	

제2조(주문 및 인도) ① 사업자는 공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도 희망일 직전 공사 영업일의 22:00까지(당일 배송 요청시에는 당일 11:00까지) 주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급 가능한 석유제품을 주유소 소재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도장소를 변경하거나 석유제품 적재 후 주문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정유사 또는 운송사를 포함)로부터 석유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품질 및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 시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 후 7일 이내에 관련 견본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석유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은 석유제품이 인도장소에서 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정유사 또는 운송사를 포함)의 인도장비 및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할 때부터 사업자에 귀속된다.

⑤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정부의 명령, 노동쟁의, 석유수급 상황의 악화로 인한 생산물량감소, 제품생산시설의 가동불능, 제품 운송수단의 사고 등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의 주문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공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공사는, 사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수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석유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3조(대금지급) ① 사업자는 석유제품 주문 시에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선 입금하여 대금을 결제한다. 다만, 대금정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익월 초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제8조 제4항 또는 제9조 제3항에 의해 발생한 채권 포함)으로 사업자의 공사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각 분기별로 해당분기 판매량의 50% 이상을 공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주유소로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인증 프로그램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알뜰주유소 영업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동 프로그램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필요시 직접 사업자가 주유소에 보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품질검사기관, 승인을 받은 자체검사자에게 위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판매 및 관리비 등의 절감과 적정마진 책정 등으로 판매가격 인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가 이에 관련된 자료나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설치등록증 등 주유소의 영업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공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종업원 교육 등을 통하여 소비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유소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알뜰주유소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친절도 등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⑨ 사업자는, 공사가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제휴계약 등에 의한 주유금액 할인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 알뜰주유소의 매출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제품 품질) 공사는 사업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한다.

제6조(사업자의 법규준수)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석유제품 취급·판매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확보,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승인과 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매한 석유제품의 규격, 품질, 상품명 등을 유지하고, 인수 당시의 상태 및 품질과 동일하게 석유제품을 관리하여 취급, 판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석유제품의 취급·판매 등과 관련한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옥외광고물법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 인도나 인수를 지연하여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자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6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경우(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되는 경우는 제외) 그 위약벌로서 사업자에게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조의 손해배상액 및 위약벌의 지급은 계약의 해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2조에 의한 석유제품의 주문은 상표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하고, 사업자가 상표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계약종료일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연장된다. 본항의 기간 계산시 초일은 산입된다.

② 일방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③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어느 한 주유소가 제9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 공사는 동일 사업자의 나머지 다른 주유소의 계약기간 만료시 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 여타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지급기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파산절차(청산이나 해산을 포함)나 채무자회생절차가 신청되거나 개시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인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3. 휴업 또는 법적 분쟁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4. 석유판매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이나 사업이 제3자에게 임대 되거나 제3자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
5. 정부조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급보증자가 발행, 배서, 보증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또는 거래중지 되는 경우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급보증자가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7. 주유소의 영업상 중요재산이나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에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8.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여타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9. 석유판매업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권리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

되는 경우

10. 사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및 제39조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단,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경고’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11. 알뜰주유소 심사 또는 자격관련 증명을 허위 제출하는 등 공사가 정한 알뜰주유소 자격요건에 주유소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12. 특별한 사유 없이 주유소의 상표시설개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13. 기타 알뜰주유소와 관련하여 공사와 사업자간에 교부된 각종 서류(알뜰주유소 전환신청서,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첨부 의무사항 이행각서 등)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일방당사자가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계약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한 여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이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나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 여타 계약에 따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10조(알뜰주유소 상표 사용) ① 공사는,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동안 ‘알뜰주유소’ 관련 상표, 상호, 디자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로 부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알뜰주유소’ 관련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알뜰주유소’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주유소 평가) ① 공사는 알뜰주유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유소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공사로부터 시정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에도 사업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통지 의무) ① 사업자는 대표자, 상호, 주소, 영업장소의 변경이나, 합병, 분할, 주유소 매각, 기타 주유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영업 폐쇄나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제29조 및 제39조를 위반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공사에게 서면 및 모사전송(FAX), 유선 등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① 사업자는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자와 제3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 계약서」(“양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이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사업자는 공사에게 양도계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공사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 권리·의무 또는 영업을 양도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영업을 하게 한 경우, 사업자는 그 제3자와 연대하여 모든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승계) ① 이 계약은 사업자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상속, 합병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가 상속인, 합병회사

등에게 포괄 승계될 경우, 승계를 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철거 등) ① 사업자는 ‘알뜰주유소 지원운영지침’에 따라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캐노피, 가격표시판, 폴싸인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종료(해지 또는 기간만료) 시 알뜰주유소로 인식될 수 있는 시설(폴싸인, 캐노피 사인보드, 디자인, 도색 등)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 이행각서’에 의한 지원금 환수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공사가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지원한 관련비용 전액을 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시설개선 외에 별도의 시설물 등을 지원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한다.

제16조(기타) ① 사업자는 공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인이 아니며 항상 독립된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공사는 알뜰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제휴 신용카드 발행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불포기) 공사는 이 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적시에 요구하지 않아도 그에 따르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8조(분쟁 해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합의관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은 울산지방법원을 전속적인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체결의 방식) 공사와 사업자는 이 계약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체결하되, 필요할 경우 종이계약서로도 체결할 수 있다. 종이계약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05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인)

○ ○ ○ 주 유 소

대 표 자 (인)

본인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서명)